## → 2-3 경각장애인 인공탈팽이관 수술 및 제활 기원

## 및 목적

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·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

## ② 근거 및 연혁

○ 근 거 : 장애인복지법 제18조(의료와 재활치료)

○ 2002.1.1. :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실시

○ 2005.1.1. : 지방이양사무 실시

○ 2005.1.15. : 인공달팽이관 수술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

○ 2009.1.1. : 민간단체 수술자 치료비 지원

### 《도비보조사업-1》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

## 🚺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- ※ 단,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
- ※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영.유아(만5세 이하)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(진단)이 있을 경우 가능
- 지원내용 :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본인부담금 600만원/인 이내 ※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/인 이내(시·군 지원)

○ 사 업 량 : 22명

○ 예 산 액 : 132,000천원(도비 100%)

## 🕗 추진계획

- 추진일정
  - (1월) 수술지워계획 시행(도 → 시·군)
  - (1~2월) 수술지원대상자 추천(시·군 → 도)
  - (2월) 수술지원대상자 통보 및 자금교부(도 → 시·군)
  - (3~12월) 추가 수술지원 대상자 선정
  - ※ 수술지원포기자 발생 시 선정 제외된 대기자 중 추가 수술지원대상자 선정예정 이므로 상반기 중 수술 실시 여부 확인, 수술포기자 발생 시 즉시보고
  - (연중) 수술 및 재활치료 실시 및 비용지급(시·군 → 의료기관)
- 선정기준(사업량 초과 신청 시)
  -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선정, 차상위초과자 건강보험료납입액 •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유무 • 수술연령 • 세대원 수)
- 제외대상
  -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
- ☞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

### 〈도 지원 〉

- 수술에 따르는 제비용 및 수술 당해 연도 재활치료비 부담
- 1인당 6,000천원 범위 내 지원
  - 수술비용은 대상자의 연령, 장애상태 및 진료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- 입원병실료는 2인실 까지 전액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(대상자 확정 통보 시 대상 가구에 필히 안내)
  - 수술비 잔액으로 같은 해 재활치료비로 지원

#### 〈 시·군 지원 〉

-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부담
- 1인당 매년 3,000천원 범위 내 지원
  -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는 동안 **언어 · 청능을 제외**한 미술, 음악 등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가능

# 📵 사업 추진절차

#### 〈 수술 전 검사 〉

-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→ 병원 사전검사 신청
  - 사전검사 비용 : 시설관리 운영비 또는 재가 장애인 본인 부담
  - 수술지원 대상자 확정 후 검사비용 및 병원검진 비용은 도비 지원
  - 검사병원 → 청각장애인에게 수술가능 확인서 발급
  -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 에서 수술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

### 〈 수술결정 및 수술 〉

-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→ 시 · 군
  -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청각장애인은 【별지 제1호】서식의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·군에 수술지원 신청
- 시·군 → 도
  - 수술희망자 전원에 대해 수술가능 확인서 및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- 도 → 시·군
  - 대상자 선정, 도비보조금 내시·교부결정 및 자금교부
- $\bigcirc$  시 $\cdot$  군  $\rightarrow$  시설장 및 수술병원에 비용 직접 지급
- 시·군에서 수술비용을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 시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

#### 〈 수술 후 사후관리 〉

-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(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)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 하고 3개월마다 해당 시·군에 치료결과 통보
- 시·군은 수술 및 재활 진행상황 파악 자료를 필히 보관

## 🕢 행정사항

- <u>수술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</u> <u>술할 수 있도록 조치</u>
-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재활치료센터 정보 제공, 사후관리 등 철저
-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절차 없이 수술하고, 이후 급여 청구 불가
  - ※ 반드시 동 사업을 신청하여 수술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수술한 급여만 지원 가능
- 수술 후 재활치료센터 선정 시 전문재활치료센터 여부 확인
  - 재활치료센터로 등록은 되어있으나, 인공달팽이관 재활을 끼워 맞추기 형태로 인력 1명 고용하여 전문재활치료센터로 둔갑한 센터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, 재활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시·군 담당자도 센터 등록증 및 신고증, 현황 등을 재차 확인